

山林養苗와 農地稅

本會 常務 李 亨 雨

우리는 오늘도 優良 健全한 山林苗木을 生産하기 爲하여 現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온갖 정성을 들여 生産한 苗木을 需給하고 나면 그 利潤에 對하여 一定한 金額의 稅金을 내야한다.

그러나 일상 法과 規程等 많은 규범속에서 生活하면서도 복잡하고, 딱딱하고, 귀찮다는 理由로 나와 직접 관계되는 일인데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그 結果 내가 내야할 稅金이 얼마인지, 어떻게 해서 나온 金額인지 알지도 못하고 고 지서에 의한 稅金을 納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언뜻 外形상으로 보아서는 판매대금이 많은 것 같아 稅金도 많이 내야될 것 같지만 실지 이 판매 대금에는 당초 苗木代價格을 決定할 당시 企業利益이 苗木代 外형의 11% 밖에 計上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所得금액이 잘못되어 세액 산출에 착오가 있었던 예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번 第21號 會誌를 通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과세대상

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나. 과세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장, 군수가 농지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농지소득 및 과세표준

가. 농지소득금액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위하여 투하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나. 기초공제

농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농지소득 금액에서 년560만원을 공제한다.

다. 과세표준

농지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세율과 세액계산

가. 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 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20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6
1,000만원초과 2,500만원이하	108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7
2,5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513만원+2,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8
5,000만원초과	1,463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나. 세액계산

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로부터 농지소득을 얻은 납세 의무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시군에 대한 농지세산출 세액으로 한다.

4. 소득신고 및 소득세 부과금지

농작물의 수확이 완료되거나 농지소득금액이 확정된때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때에는 그 농지소득 금액을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하여야 하며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세액산출방법(예)

가. '92년도산 생산수급량

수 종	요령	수급 본수	'92산 단가	총요 목대
		천본	원	천원
작 나 무	2-2	200	141	28,200
낙 엽 송	1-1	200	119	23,800
스트로브잣	1-2	100	110	11,000
계				63,000

나. 농지소득액 :

$$63,000\text{천원} \times 11\% (\text{기업이익}) = 6,930\text{천원}$$

다. 과세표준액 :

$$6,930 - 5,600 (\text{기초공제}) = 1,330\text{천원}$$

라. 세율 : 100분의3

$$\text{마. 세액} : 1,330\text{천원} \times 100\text{분의}3 = 39,900\text{원}$$

※ 이상의 예를 참고하여 금후 부과되는 농지세 납부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